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지침

빅데이터실 빅데이터결합부

제정 2021.3.31. 지침 제328호

전부개정 2022.11.11. 지침 제378호

개정 2024.8.8. 지침 제43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익명처리”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보호위원회등”이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결합신청자”란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결합신청자에는 가명정보를 제공만 하는 자,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결합정보를 이용하는 자 또는 가명정보의 제공 없이 결합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6. “결합키”란 결합 대상인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으나 다른 결합대상정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로서,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매개체로 이용되는 값을 말한다.
7. “결합키연계정보”란 결합키가 동일한 정보에 관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를 말한다.
8. “결합대상정보”란 결합신청자가 결합을 위해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가명정보에서 결합키를 제외한 정보를 말한다.
9. “가명정보 보유기관”이란 결합대상정보를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10. “결합전문기관”이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등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11. “결합키관리기관”이란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결합정보”란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대상정보를 결합하여 생성된 정보를 말한다.
13. “결합실”이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되어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을 말한다.
14. “추가 가명·익명처리”란 결합정보의 반출심사 전 결합신청자가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비식별공간”이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되어, 결합신청자가 추가 가명·익명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

원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을 말한다.

16. “결합데이터분석센터”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가 되어,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을 말한다.
17. “반출”이란 결합정보를 이용하려는 결합신청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결합전문기관 외 반출 또는 결합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로의 반출이 있다.
18. “반출대상정보”란 결합정보 중 반출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를 말한다.
19. “반출정보”란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된 결합정보 중 결합전문기관의 심사를 통해 반출된 정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가명정보의 결합은 결합신청자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며 반출심사를 통한 제공은 법 제58조의2에서 정한 정보로 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익명처리하고, 익명정보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여 제공한다.

제4조(업무) 심사평가원은 제2조제10호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명정보의 결합에 관한 업무
2. 가명정보의 반출에 관한 업무
3.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조(업무의 관장)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과 관련한 제반업무는 「직제규정」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타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업무처리의 원칙) 심사평가원은 가명정보의 결합, 가명처리 및 반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결합 전 가명처리, 반출 전 추가 가명·익명처리, 반출 전·후 분석 지원을 수행하는 심사평가원 담당자는 결합신청서 접수, 결합대상정보의 가명정보 처리 수준 검토, 모의결합대상정보의 처리수준 검토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가명정보의 결합

제7조(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① 심사평가원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결합신청서
2. 가명정보 보유기관의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승인 등 가명정보 적정성 검토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가명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한함)
3.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1부
5.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 1부(가명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한함)
6.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결합정보를 이용하는 자에 한함)
7. 그 밖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심사평가원은 결합신청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결합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 등 접수확인서를 송부하여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서류의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평가원은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 결합대상정보의 가명처리 내역에 관한 서류를 가명정보 전송 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원은 가명정보의 결합 일정 및 절차 등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심사평가원은 제7조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명정보 결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가명정보의 결합 관련 수수료, 이용료 등 감면 또는 중과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별표1]의 결합적정성 심의기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1. 결합 목적의 적합성
2. 가명정보 결합 시 안전성
3. 데이터 활용방법의 안전성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외부위원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운영하는 데이터심의위원 풀(POOL)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8.>

1. 내부위원

- 가. 가명정보의 결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
- 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다. 빅데이터 분석 및 통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라. 법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외부위원

- 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4.8.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합신청의 경우 외부위원 3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8.8.>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후보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위원 풀(Pool)을 활용하는 경우는 추천기관의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제1항의 내·외부위원은 심의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패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서약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8.>

⑥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위원 풀(Pool)을 활용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전 심의기간에 한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8.8.>

② 위원장은 결합신청자의 결합신청이 접수된 이후 21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의 신청서류 보완기간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가명정보 전송 시 가명정보의 가명처리 내역서를 제출하는데 소요

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 또는 결합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안건 등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8.8.>

⑥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면 의결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 정족수에 관해서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직제규정」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의 장으로 한다.

⑧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4.8.8.>

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는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심의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위원이 질병, 사고 등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8.8.>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자신의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자신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심의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8.>

제12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심의위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8.8.>

1. 심의위원, 심의위원의 배우자, 심의위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가명정보의 결합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
2. 심의위원 또는 심의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가명정보 결합 신청과 관련하여 자문을 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위원의 참여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제척사유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척·기피되거나 회피한 심의위원은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심의위원의 해임·해촉) 원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8.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의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심의위원회 비밀의 유지 등) ① 심의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0조제8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회의 시작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기록 및 보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과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출석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
2. 참석자 명단
3.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는 각각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8.8.]

제16조(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의 지급)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8.8.]

제17조(결합 신청 승인 등) 심사평가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신청에 대한 승인여부가 결정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심사) 결과통지서를 결합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제18조(정보 수신) ① 심사평가원은 결합키연계정보 및 결합대상정보를 수신하거나 제33조제2항에 따른 반출 승인이 완료된 결합정보를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관리대장(이동형 저장장치를 통해 반출·입한 경우에 한함)과 별지 제12호서식의 결합관련 데이터 반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수신한 결합대상정보에 대하여 무결성 검토를 수행하고,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결합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결합신청자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결합신청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결합률 확인을 거치는 경우 결합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결합신청자는 결합대상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 전송함에 있어 결합률 통보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19조(가명정보의 결합) ① 결합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결합신청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결합키와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결합키관리기관에 전송하여야 하며, 결합키관리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결합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결합신청자는 결합대상정보가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내역,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와 함께 심사평가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결합대상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8.>

③ 결합키관리기관은 심사평가원이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결합키연계정보의 전송을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가명정보의 결합을 결합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⑤ 심사평가원은 가명정보 결합을 완료한 후 결합신청자에게 제35조에 따른 수수료 등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송부한다. 결합신청자는 결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한 이후 제22조에 따른 추가 가명·익명처리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① 심사평가원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직접 결합(이하 “자체 결합”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결합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평가원이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5호 내지 제8호의 준수사항을 면제한다.

1. 심사평가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가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외부전문가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것.

가. 제7조제1항의 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확인과 보완 요구

나. 제19조제2항의 결합대상정보의 가명처리 수준 확인과 추가 처리 요청

2. 심사평가원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를 심사평가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로만 구성할 것

3. 심사평가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신청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결합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

4. 심사평가원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제1항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결합한 가명정보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관리할 것

5. 심사평가원이 결합된 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까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누적 실적범위에서 자체결합을 수행할 것, 이 경우 누적실적은 2020년 8월 5일 이후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6. 제2호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는 유사분야의 다른 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또는 해당 전문기관에서 추천한 외부전

문가로 구성할 것. 이러한 경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운영하는 데이터 심의위원 풀(Pool)을 활용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 기관과 교차하여 제2호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 구성을 의뢰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것

8. 제5호에 따른 자체결합에 관련한 각목의 사항을 자신이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것

가. 결합된 정보의 이용자 및 관리책임자

나. 결합된 정보의 활용 목적

다. 결합된 정보의 항목

라. 결합된 정보의 활용 기간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 각 호에 관한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8.8.]

제20조(가명정보의 결합률 확인 및 추출) ① 결합기관리기관은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른 결합키연계정보 생성과정에서 결합률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결합신청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합기관리기관에 결합대상정보의 추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8.>

③ 결합기관리기관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합대상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결합신청자에게 추출 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추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21조(가명정보의 모의결합) ① 결합신청자는 결합의 유용성을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결합을 수행하기 전에 심사평가원과 협의하여 심사평가원에 일부 가명정보의 결합(이하 ‘모의결합’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합신청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생성한 결합

키 또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모의결합을 위해 심사평가원과 협의 하여 생성한 모의결합키(이하 이 조에서 “결합키등”이라 한다)를 심사평가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8.8.>

② 심사평가원은 모의결합 대상 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모의결합 가능 여부를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모의결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모의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의 결합키등을 선정하여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8.8.>

③ 결합신청자는 모의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내역, 결합에 필요한 결합키등과 함께 심사평가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모의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8.>

④ 결합신청자는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모의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아 결합 데이터분석센터에서 분석할 수 있다. 단, 결합신청자는 분석한 정보 등 결과물을 심사평가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⑤ 심사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모의결합된 정보 제공시 결합키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결합신청자가 분석을 마친 경우 모의결합에 사용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8.8.>

제22조(결합정보의 반출 전 처리) ① 결합신청자는 결합정보의 반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비식별공간에서 추가 가명·익명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 가명·익명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8.8.>

②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은 결합신청자가 비식별공간에서 결합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결합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추가 가명·익명처리를 하기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데이터 추가 가명·익명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결합신청자 및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추가

가명·익명처리 또는 반출심사를 위해 비식별공간을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반출

제23조(반출 신청) ① 결합신청자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정보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8.>

1.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신청서
2.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명정보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협약서
3. 반출대상정보에 관한 서류(가명·익명처리 기법, 수준 등)
4. 반출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5. 반출 정보의 안전조치 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심사평가원은 서류의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결합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반출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원은 결합신청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등 일정을 정하여 결합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 등 접수확인서를 송부하여 통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반출신청이 있으면 반출대상정보에 대한 추가 가명·익명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한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출 검토의견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반출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심사평가원은 제23조에 따른 반출대상정보의 반출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반출대상정보의 반출에 관한 사항

2. 반출 관련 수수료, 이용료 등 감면 또는 증과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반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별표2]의 반출 심사기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1. 결합 목적과 반출정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3. 반출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제2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루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원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운영하는 데이터 심의위원 풀(Pool)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심사평가원은 반출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결합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8.8.>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4.8.8.>

③ 심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결합신청자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루 포함하여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반출신청의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한다. <개정 2024.8.8.>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④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후보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위원 풀(Pool)을 활용하는 경우는 추천기관의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참여하는 제3항의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패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8.>
- ⑥ 심사위원의 임기는 제9조제6항을 준용한다.
- 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8.8.>

- ② 위원장은 반출신청이 접수된 이후 21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평가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안건 등을 각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제2호 심사 항목에 대해서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석위원 전원 합의에 따른다. <개정 2024.8.8.>
- ⑤ 심사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면의결서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⑥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직제규정」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의 장으로 한다.

⑦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4.8.8.>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는 사람을 심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심사위원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심사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사고 등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8.8.>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자신의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자신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심사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8.>

제28조(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심사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사위원, 심사위원의 배우자, 심사위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가명정보의 반출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신청한 경우
2. 심사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가명정보 반출신청과 관련하여 자문을 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의 참여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심사위원회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제척사유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척·기피되거나 회피한 심사위원은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9조(심사위원의 해임·해촉) 원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8.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심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0조(심사위원회 비밀의 유지 등) ① 심사위원은 반출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26조제7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회의 시작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31조(심사위원회 기록 및 보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
2. 참석자 명단
3.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은 각각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심사위원회 수당의 지급) 심사위원회의 반출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에게는 심사평가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반출승인된 정보의 반출 등) ①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반출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가 결정되면 심사평가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심사) 결과통지서를 결합신청자에게 송부한다.

② 반출신청에 대한 승인 결정시 심사평가원은 결합신청자에게 반출대상정보를 반출한다.

③ 제2항의 반출은 정보통신망, 보조저장매체, 메일 등 심사평가원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제34조(분석센터의 이용) ① 결합신청자는 반출대상정보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이 완료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심사평가원 내 분석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 내 분석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결합신청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결합데이터 분석센터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사평가원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결합신청자에게 제35조에 따른 수수료 등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송부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제3항에 따른 비용납부가 확인되면 분석센터 출입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후 출입을 허가한다.

⑤ 결합신청자는 분석센터 이용을 통한 반출정보 분석 후 심사평가원에 그 결과값에 대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사평가원은 제5항에 따른 결과값 제공 요청에 대해 적정성 확인 후 결과값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5조(수수료) 심사평가원은 가명정보 결합·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기준, 감면대상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이의신청) ①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결합신청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① 심사평가원은 안전한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8.>

1.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준수
2.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3. 비인가 인력·장치·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조치
4. 결합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② 심사평가원은 가명정보의 반출 이후에는 가명정보의 결합·반출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파기이력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1. 결합·반출신청서 및 첨부 서류
2. 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3. 결합정보에 대한 가명 또는 익명처리 및 분석을 위한 공간 이용 관련 결합신청자의 보안서약서
4. 결합정보 및 심사 대상 정보에 대한 파기 대장

③ 심사평가원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
2. 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3. 결합된 정보 및 심사 대상 정보에 대한 파기 대장

[전문개정 2024.8.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고시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체결합 관련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서류
2.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
3.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가. 제공받는 자
 -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다. 제공하는 항목
 - 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문개정 2024.8.8.]

⑤ 심사평가원은 결합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상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를 수행하지 않는 등 반출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결합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제37조의2(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① 심사평가원은 영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19조의2제1항의 자체결합의 실적은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성된 영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실적보고서
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4.8.8.]

제38조(기록·보관 및 보안조치) ① 심사평가원은 가명정보의 결합·반출심사 및 반출 등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의 결합관련 신청·접수·심의 내역, 승인·미승인 처리내역, 결합수행내역 등에 대한 시스템 이력 및 내부결재 내역 등
2. 비식별처리, 반출 신청, 비식별처리 확인, 반출 심사 등의 처리내역에 대한 시스템 이력 및 내부결재 내역 등

② 결합신청자가 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심사평가원에 반입(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한 반입)하는 경우 압축, 암호화 및 무결성 검증 등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가명정보의 결합을 위해 제공받은 결합키연계정보 및 결합대상정보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완료된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시스템 점검)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시스템 담당자는 결합·반출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접속기록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하되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위변조 방지 및 대응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0조(출입관리) ① 심사평가원은 가명정보의 결합, 비식별처리 또는 반출 심사 등을 위해 결합실 또는 비식별공간 등 독립공간에 출입하는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출입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립공간에 출입하는 자는 [별표3]의 독립공간 출입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휴대폰(태블릿, 노트북 등) 렌즈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퇴실 시 부착여부를 재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태블릿과 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는 독립공간 내에서 사용을 금한다.

부 칙 <2021. 3. 31.>

이 지침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11.>

이 지침은 202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8.>

이 지침은 202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결합적정성 심의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 아래의 「결합 적정성 심의기준표」를 참고하여 결합 제공여부를 심의하며, 항목별 평가결과가 적정인 경우 결합할 수 있다.
- 과제명:

구분	평가내용	평가결과
결합목적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목적(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해당여부 ■ IRB 내 가명정보 결합 활용계획 포함여부 ■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 제시 여부 ■ 자료 제공 심의 등 제공(활용) 승인서 포함 여부 ■ 결합대상 정보의 연구 목적을 위한 최소 자료 여부 ■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적정 <input type="checkbox"/> 보완필요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보완필요 또는 부적정인 경우 사유>	
결합시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합시 가명처리 수준의 적정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항목 및 민감정보의 가명처리 수준 등 검토 - 기관별 결합대상정보에 유사변수가 존재 시 가명처리 수준 상이여부 ■ 가명처리를 수행한자와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자, 결합 정보 이용자의 분리여부 ■ 연구신청자의 관련자료 보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료 보유 시 결합정보 접근권한 분리 등 	적정 <input type="checkbox"/> 보완필요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보완필요 또는 부적정인 경우 사유>	
데이터 활용방법의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상병 활용 시 특별한 보호조치가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상병(예시): ①정신질환 ②희귀질환 ③성매개감염병 ④후천성 면역결핍증 ⑤낙태 ⑥학대 ■ 연구계획서에 기술된 연구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결합 신청되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합된 자료는 결합키 관련정보 모두 제거되므로 추가 결합 불가 ■ 연구계획서의 결합정보 활용방법에서 개인식별 가능성포함 (식별을 통한 사업추진 등) 여부 	적정 <input type="checkbox"/> 보완필요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보완필요 또는 부적정인 경우 사유>	
(최종평가) (상세의견)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평가위원 서명
		이름 (인)

반출 심사기준표(제24조제2항 관련)

아래의 「반출 심사기준표」를 참고하여 결합정보의 반출 여부를 심의하며, 항목별 평가결과가 적정인 경우 반출할 수 있다.

과제명:

구분	평가내용	평가결과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출정보로 결합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 반출정보의 활용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처리 원칙 부합 여부 ■ 반출정보의 다른 목적으로의 활용 가능성 ■ 반출장소의 분석 환경(분석 프로그램 등) 적절성 	적정 <input type="checkbox"/> 보완필요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보완필요 또는 부적정한 경우 사유>	
개인식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가명·익명처리의 적정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가능정보, 준식별정보, 민감정보의 정확한 분류여부 - 분류한 정보에 따른 가명처리 여부 및 특이치 처리 여부 - 반출후 보유데이터 수준에 따른 결합을 통한 식별 가능성 ※ 반출정보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거나, 반출정보를 제공받는 가명정보처리자 입장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적정 <input type="checkbox"/> 보완필요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출정보 이외의 다른 자료 결합 가능성 여부 <보완필요 또는 부적정한 경우 사유>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조치 계획 수립의 적정성 ■ 파기계획의 구체성 및 파기확인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파기기간 명시여부 ■ 특정상병이 포함된 자료 반출의 적정성 ■ 결합신청자를 제외한 제3자의 자료 활용 가능성 ■ 과거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이력 점검 	적정 <input type="checkbox"/> 보완필요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보완필요 또는 부적정한 경우 사유>	
(최종평가) (상세의견)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평가위원 서명 이름 (인)

* 단, 식별가능성 항목에 대해서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원 합의인 경우에만 제공 가능함

[독립공간 출입자 유의사항](제40조제2항 관련)

【 출입자 유의사항 】

- ① **가명정보 결합, 비식별처리, 반출심사 등을 위해 결합실, 비식별공간, 결합데이터분석센터(이하 “독립공간”)에 출입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독립공간에 출입하기 전 촬영, 녹화기능이 있는 모든 장비(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등)의 카메라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퇴실 시 보안스티커의 부착여부를 재확인 받아야 합니다.
 - 태블릿PC와 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는 독립공간에서 사용을 금지합니다.
 - 부여받은 사용자 계정(ID)은 본인만이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독립공간 운영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예 : 회의 및 업무방해 등)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설물을 파손·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②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발견자는 주위에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유도표지를 따라 가까운 비상구를 이용하여 즉시 옥외로 대피합니다.
 - 연기 속을 통과할 때는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무실 또는 당직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비상사태 발생 때는 독립공간 운영자 또는 보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독립공간 내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시설과 비품은 소중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내 비품은 독립공간 밖으로 유출을 금지 합니다.
 - 애완동물이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출입할 수 없습니다.
 - 퇴청 전 이용한 시설은 정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공간 내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분실한 경우 변상조치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독립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운영자 또는 보조 관리자의 안내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결합 신청서

신청번호	
접수번호	

결합신청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전화, e-mail)	
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결합 개요		
전체 결합신청기관명	총 기관 수	<input type="checkbox"/> 개 기관
	기관명	
반복결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추가(결합접수번호 :)	
추가절차 신청	결합률 확인 <input type="checkbox"/>	가명정보 추출 <input type="checkbox"/> 모의결합 <input type="checkbox"/>

가명정보 제공자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제출 방법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오프라인	
지원 요청 사항	<input type="checkbox"/> 결합 신청에 필요한 가명처리	
가명정보 제공 담당자	이름	연락처 (전화, e-mail)

결합정보 이용자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결합 목적	<input type="checkbox"/> 통계작성 <input type="checkbox"/> 과학적 연구 <input type="checkbox"/>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세부 결합 목적		
분석공간 이용	<input type="checkbox"/> 추가 가명처리 <input type="checkbox"/> 결합정보 분석 <input type="checkbox"/> 이용안함	
지원 요청 사항	<input type="checkbox"/> 반출 전 처리 <input type="checkbox"/> 분석	
결합정보 이용 담당자	이름	연락처 (전화, e-mail)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합을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결합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1부 2.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결합정보 이용자에 한함) 3.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전체 항목명, 가명처리 대상 항목명*, 가명처리 내역 등**) 1부(가명정보 제공자에 한함) * 결합키 생성에 사용된 항목 제외 ** 결합 대상 정보가 확정된 이후에 제출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8.8.>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작성자	(소속) (이름)	(직위)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결합적정성심사·반출심사, 추가 가명·익명처리, 분석센터 이용, 보안서약서, 가명정보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이의신청서 제출 관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년

4. 귀하는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신청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신청 등 접수확인서

신청번호	
------	--

1. 신청 등 접수내역

신청 등 구분	<input type="checkbox"/> 가명정보 결합신청	<input type="checkbox"/> 반출신청	
신청세부내역			
신청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정부·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신청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 (전화, 이메일)

2. 안내 사항

접수부서		접수일자	
담당자		연락처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직무윤리 서약서

본인은 (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 반출심사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
2. (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 반출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모든 기밀사항에 대한 외부 유출·누설 금지 및 상기 위원회 목적 외 사용 금지
3. (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 반출심사위원회) 참석시 특정기관 및 단체 등의 이익 대변 금지
4. (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 반출심사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 반출심사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 반출심사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 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 반출심사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 반출심사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 반출심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 약 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심의의결서

심의차수		심의건수			
심의일자		심의유형	(대면 / 서면)		
재적위원(명)		불참위원(명)			
참석위원(명)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안건명	과제명	신청기관	심의내역		의결내역
			승인(명)	미승인(명)	
기타사항					

위의 사항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또는 의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심의·심사) 결과통지서

신청번호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가명정보 결합신청 <input type="checkbox"/> 반출신청		
신청명			
신청자			
심의·심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미승인	결정일자	
안내사항			
담당부서		통지일자	
담당자		연락처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결합신청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

위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납부고지서

신청번호		
1. 신청접수내역		
신청내역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가명정보 결합 <input type="checkbox"/> 분석센터 이용(차수:)	
	신청명	
	신청자	
접수내역	접수부서	
	담당자	연락처
2. 비용고지내역		
고지금액	① 부과금액	
	② 감면액	
	계(① - ②)	
	감면사유	
납부방법		
납부기한		

위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보안서약서

본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지침」과 아래사항을 숙지하여 가명정보의 비식별처리, 반출심사 및 분석센터 이용을 하겠으며 관련 규정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에 수록된 모든 전산자료를 승인받은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겠으며, 외부에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는다.
2. 본인은 부여된 사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가 중요한 보안사항임을 인식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분석센터 이용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에 외부 통신망을 무단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분석센터 사용자에게 한함).
4. 본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시스템을 신청목적과 관련된 경우에만 사용하겠으며,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 깊게 사용·보관한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반출신청서

반출접수번호	
결합접수번호	

결합신청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전화, e-mail)	

결합 유형	
반복결합	<input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추가

반출 개요	
파일명	
반출 목적	<input type="checkbox"/> 통계작성 <input type="checkbox"/> 과학적 연구 <input type="checkbox"/>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세부 반출 목적	
반출 정보 유형	<input type="checkbox"/> 가명정보 <input type="checkbox"/>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익명정보)
제공 받는 방법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오프라인 <input type="checkbox"/> 결합전문기관 내 분석공간
지원 요청 사항	<input type="checkbox"/> 반출된 정보의 분석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제3항·제6항,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기 위하여 결합 전문기관에 반출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결합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반출 대상 정보에 관한 서류 1부(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 반출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반출 정보의 안전조치계획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가명정보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약속서

(앞쪽)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명정보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약속서 내용

본인은 반출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 처분 등 어떠한 불이익 및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제공받은 반출정보 이용 시 공익에 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법령 등에 명시한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한다.
- 제공받은 반출정보를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 제공받은 반출정보를 복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대여·판매하지 않는다.
- 제공받은 가명·익명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 시도하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어떠한 접근도 시도하지 않는다.
- 반출정보 이용 중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상황 발생 시, 즉시 정보처리를 중단하고 관련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의 회수 또는 파기 등 필요한 협조에 성실히 응한다.
- 반출정보 이용 결과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무관하고, 분석 과정 및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 제공받은 반출정보를 활용하여 보고서, 논문, 발표자료, 보도자료 등의 결과물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출간물에 명시하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 본 자료는 (데이터제공기관명1, 데이터제공기관명2)의 자료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하여 제공한 것을 활용한 것이며, 연구결과는 데이터 제공기관 및 결합전문기관과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과물의 내용을 인용·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뒤쪽)

-
9. 반출정보의 이용 목적 달성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반출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폐기확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단, 결합데이터분석센터 이용 시 제외).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반출정보 이용 중은 물론 이용 종료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제 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반출 검토의견서

결합신청번호			
과제명			
신청기관		신청일자	
신청자명		검토일자	
반출 방법	<input type="checkbox"/> 외부반출 <input type="checkbox"/> 내부반출(기관 내 폐쇄망 분석센터)		
검토 기준		검토자 1	검토자 2
1. 반출신청서는 조건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가?			
2. 반출대상정보의 이용목적, 활용계획이 충분히 설명되었는가?			
3. 반출대상정보의 세부내용 설명이 충분한가?			
4. 개인식별자를 대체하는 키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결합전문기관이 생성한 제3의 키는 제외)			
5. 프라이버시보호모델(K익명화)는 적절히 수행하였는가?			
6. 반출대상정보는 활용목적에 맞게 처리 되었는가?			
7. 신청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면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가?			
8. 안전조치계획 확인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검토 결과			
검토자 1	(서명)	검토자 2	(서명)

결합데이터 분석센터 이용신청서

결합신청번호	
과제명	
기관명	
신청자	(성명) (소속 / 직위) (연락처) (이메일)
이용자 (신청자와 이용자가 다를 경우 작성)	(성명) (소속 / 직위) (연락처) (이메일)
이용 목적	
이용 희망기간 ※ 주말·공휴일은 이용 불가	예) 2021.10.4.(월)~10.15.(금) (10일간, 주말·공휴일 제외)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 분석 및 이용은 IRB 승인된 연구기간 이내에서만 가능함. 분석 및 이용 기간은 최초 신청시 최대 180일, 이용 연장 시 최대 90일로 하되, 총 이용기간은 최초 신청일 기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하게 이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등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직제규정」상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 이용 가능함 </div>
이용 데이터	
첨부 서류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8.8.>

이의신청서

신청번호			
과제명			
신청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주소			
신청분야	<input type="checkbox"/> 결합신청 <input type="checkbox"/> 반출신청		
이의신청내용			
신청사유			

위의 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출입관리대장

○ 관리공간: 결합실, 비식별공간, 분석센터

일자	소 속 (기관명)	성명	연락처	출입카드관리번호 (분석센터에 한함)	입실시간	퇴실시간	목적*	빅데이터결합부 확인	
								담당	팀장

* 목적: 결합처리, 비식별처리, 반출심사 등 명기